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9. 7 선고 2023가단111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21. 10. 1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D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21. 10. 1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D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D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4. 승소판결을 받아, 2015. 7. 24.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37381호).

D의 아버지 F이 2020. 12. 25. 사망하였고, D와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F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D와 피고들은 2021. 10.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차선영

